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고사항	폐업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		폐업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폐업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보관창고, 사업장(업소)의 소재지			
	폐업 사유			
	폐업 일자			
비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영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유의사항

제조업·원제업·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폐업신고서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